

의안번호	제 433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9년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33
----------	-----

제출연월일 : 2009. 11. 1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특수지 정기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벽지지역 36개 기관을 별표와 같이 구분함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09. 8. 7. ~ 8. 2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특수지급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 구분표(제2조 관련)

□ 벽지

등급	시·군	구, 읍·면·동, 리	기관명
가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영동학생야영장
나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수정초등학교삼가분교장
다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제천학생야영장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
		단성면 가산리	단천초등학교가산분교장
		대강면 장정리	대강초등학교장정분교장
라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용담초등학교현양원분교장
	충주시	양성면 목미리	강천초등학교
		이류면 매현리	달천초등학교매현분교장
		종민동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화당초등학교
		한수면 송계리	한송초등학교
		한수면 송계리	한송중학교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	미원초등학교금관분교장
	보은군	마로면 세종리	세종초등학교
		회남면 거교리	회남초등학교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
		동이면 우산리	동이초등학교우산분교장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	용화초등학교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문백면 은탄리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문백면 은탄리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장연초등학교
		장연면 오가리	장연중학교
		청천면 송면리	송면초등학교

등급	시·군	구, 읍·면·동, 리	기관명
		청천면 이평리	송면중학교
	음성군	음성읍 삼생리	남신초등학교덕생분교장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가곡초등학교대곡분교장
		어상천면 임현리	어상천초등학교
		어상천면 임현리	단산중학교
		어상천면 임현리	단산고등학교
		영춘면 별방리	별방초등학교
		영춘면 별방리	별방중학교
		영춘면 상리	영춘초등학교
		영춘면 상리	영춘중학교
		적성면 대가리	대가초등학교

관계법령 발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243호, 2008.12.31 공포, 2009.1.1 시행]

-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향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996호, 2008. 9.10, 공포·시행]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 10]의 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③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④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